

김포시 태권도 시범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	-----

제출년월일 2025. 2. .
제 출 자 김기남, 김계순 의원

1. 제안이유

김포시의 태권도 진흥과 청소년 체육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태권도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지원 (안 제3조 ~ 제4조)
다. 홍보 및 준용 (안 제5조 ~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협의
다. 그 밖의 사항
-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5. 2. . ~ 2025. 2. .
나) 예고결과 :
 - 부서협의
가) 협의기간 : 2025. 2. . ~ 2025. 2. .
나) 협의결과 :
 - 관련부서 : 체육과

김포시 태권도 시범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포시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 시범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태권도 시범사업”이란 김포시 태권도를 진흥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훈련, 시범 공연, 홍보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권도 시범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시장은 태권도 시범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훈련 및 각종 대회 및 행사 추진에 소요되는 물품 등 경비
2. 급식비·간식비 및 피복비
3. 감독·코치의 인건비
4. 보험 가입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태권도 시범사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홍보) ① 시장은 태권도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행사 연계,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태권도의 날을 맞아, 태권도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태권도 시범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18.] [법률 제19839호, 2023. 12. 2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 고유 무도(武道)인 태권도를 진흥하고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태권도공원을 조성하여 국민의 심신단련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태권도를 세계적인 무도 및 스포츠로 발전시켜 국가를 널리 알리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8.>

[전문개정 2007. 10. 17.]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국민의 자발적인 태권도 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태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태권도의 날) ① 태권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태권도 보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9월 4일을 태권도의 날로 정한다.

② 태권도의 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태권도법 시행령)

[시행 2024. 12. 27.] [대통령령 제35089호, 2024. 12. 24., 타법개정]

제3조(태권도의 날)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태권도단체 등은 법 제7조에 따른 태권도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 태권도 경기(시범 경기를 포함한다)
- 태권도 관련 세미나, 포럼 등 학술행사
- 태권도 유공자 포상
- 그 밖에 태권도의 보급 및 진흥에 관한 행사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행사를 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